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1. 7 선고 2024가단16309 판결 [건물명도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주식회사 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4. 11. 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나. 6,000,000원을 지급하고,
다. 2024. 8. 21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조영기

별지